제2강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원칙



신의성실의 원칙

7.

소급과세 금지의 원칙

세관공무원 재량의 제한

1. 관세법의 효력

- □ 사람에 관한 효력: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관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,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- □ 장소에 관한 효력: 관세법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효력을 갖는다. '한반도와 부속도서'라는 영토와 12해리까지의 영해 및 그 영공에서 효력을 발생한다.
- □ 시간에 관한 효력: 법령에 시행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부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2. 관세법의 기본원칙(개요)

관세법을 포함한 조세법 해석의 기본원칙

조세법률주의

조세평등주의

◆ 관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: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 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조세법률주의

- □ 과세요건 법정주의: 과세권의 행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면에서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 또는 그 법률의 위임의 한도내에서 정한 법규명령에 의하여야한다.(헌법 제59조 적용)
- □ 과세요건 명확주의: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은 일의적(一義的)이고 명확하며, 상세하여야 한다.
- □ 소급입법의 금지 : 모든 법령은 공포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행위나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.(헌법 제13조)

4. 조세평등주의

- □ 조세에 있어 평등원칙 : 납세자간에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조정하여야 한다.(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적용)
- □ 조세평등의 의미는 조세의 부과 징수가 절대적으로 평등하여 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,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 적인 과세를 인정
- 동일한 수입물품에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나, 기초원재료의 관세율은 낮게 과세하고 완제품의 관세율은 높게 과세

5. 관세법 적용의 원칙(개요)

신의성실의 원칙

소급과세금지의 원칙

[세관공무원 재량의 제한]

6. 신의성실의 원칙(규정)

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. - 관세법 제6조 -

7.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

-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언동인 '공적인 견해' 표시가 있어야 한다.(과세관청의 언동)
-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.(납세자 신뢰의 정당성)
-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어떤 세무상의 처리를 하였어야 한다.(신뢰에 기초한 납세자 행위)
-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.(과세관청의 소급적인 처분)

8.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(규정)

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,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. - 관세법 제5조제2항 -

9.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

-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.(장기간 사실의 존재)
- 비과세 관행이 납세의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한다.(비과세관행의 성립)
-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도 공익상의 필요 등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 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.(과세 관청의 동의)

10. 세관공무원 재량의 제한

◆ 관세법 제7조: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.

- □ 재량제한의 목적: 관세법 제7조는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을 해석 또는 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, 법의 목적 등에 벗어난 재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(과잉금지의 원칙)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
- ▶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목적